2018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2018년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식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집중신청기간 : 2018년 12월 14일(목요일)까지 신청

※이후 추가신청 가능하나 지원이 늦어질 수 있음.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신청서 참조)

급식지원방법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배달 [ ] 지역아동센터 [ ] 학교급식시설 ※ 2016.9.1 이후 초등생 이하 신규 신청자는 도시락배달만 가능 ※ 지역아동센터 급식희망자는 각 지역아동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급식전자카드(푸르미카드)와 지역아동센터 중복이용은 불가함.

□ 신청 시 필요 서류

분류	제출서류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전산 확인), 소득 확인서(건강보험 미가입) 등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자는 소득확인서류 제출 제외
지원 사유 확인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동 주민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동	연락처	동	연락처
부평1동	509-7804	청천2동	509-7918
부평2동	509-7816	갈산1동	509-7924
부평3동	509-7826	갈산2동	509-7936
부평4동	509-7498	삼산1동	509-8880
부평5동	509-3980	삼산2동	509-7954
부평6동	509-7855	부개1동	509-7963
산곡1동	509-7862	부개2동	509-7974
산곡2동	509-7873	부개3동	509-7984
산곡3동	509-7884	일신동	509-7997
산곡4동	509-7891	십정1동	509-8004
청천1동	509-7907	십정2동	509-8015

□ 부평구청 아동급식 담당자 연락처

○ 평생학습과 아동급식 담당 ☎ 509-3963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869천원	27,572	4,704	28,479
		(29,607)	(5,051)	(30,600)
2인	1,480천원	46,438	18,867	46,800
		(49,865)	(20,259)	(50,254)
3인	1,915천원	59,850	38,276	60,596
		(64,267)	(41,101)	(65,068)
4인	2,350천원	74,142	65,213	74,856
		(79,614)	(70,026)	(80,380)
5인	2,785천원	86,958	88,155	87,580
		(93,376)	(94,661)	(94,043)
6인	3,219천원	100,955	108,657	102,190
		(108,405)	(116,676)	(109,732)

* 괄호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액수임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